

제23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이용주 의원 대표발의】



2021. 4. 19.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26호로 2021년 4월 8일 이용주 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 등과 부합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가축 사육 관련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협 의: 관계부서(일자리경제과) 협의 완료
- 입법예고 결과(2021. 4. 8 ~ 4. 13.):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법령이 개정된 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에서 사육제한 가축의 종류를 규정한 상위법을 「축산법」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가축분뇨법)」로 변경하였음. 이는 조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가축분뇨법」으로 이에 따라 일치시킨 것으로 보임.
- 안 제3조(사육허가) 제2호의 상위법에 따른 용어에 맞춰 정비하였고, 그 외 띄어쓰기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한 것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검토 결과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는 2009년 이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에 이번 개정을 통해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의 제명 사항 변경을 반영하고, 제한구역 내에서 예외적으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허용 범위를 현실에 맞게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법적 적합성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향후 집행부에서는 상위법 개정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임.

참 고 자 료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 10. 생략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사육동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이란 젓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